

감 사 원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통보(시정완료)

제 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춘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미시

조 치 기 관 춘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미시

내 용

1. 업무 개요

춘천시 등 3개 기관¹⁷⁰⁾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m³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및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등을

170) 춘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미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고시¹⁷¹⁾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단위단가는 착공일 기준 연도의 단가를 적용하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그런데 춘천시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 대표 BQ)이 2014. 11. 25. 기존의 사무소 용도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이 1일 11.22m³ 증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데도 이에 해당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247,0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춘천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별표 1]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현황”과 같이 강원도 춘천시 등 13건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소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사용되어 오수발생량이 1일 10m³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 477,892,35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소 부과

또한 구미시는 2014. 7. 16. 착공하고 이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5. 1. 6. 사용승인한 관내에 소재한 건축물(건축주 BR)에 대한 하수도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착공일 기준 단위단가 1,011,000원이 아닌 건축협의일(2014. 6. 26.) 기준 단위단가

171)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835,000원을 적용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5,014,240원만큼 적게 부과하였고, 2013. 3. 16. 착공하고 이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2014. 12. 1. 사용승인한 관내 등에 소재한 건축물(건축주 주식회사 〰〰)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서 부과 신청일¹⁷²⁾ 기준 단위단가¹⁷³⁾ 1,011,000원(2014년 10월 적용단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의일(2012. 1. 4.) 기준 단위단가 716,000원을 적용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8,903,600원만큼 적게 부과하는 등 [별표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소 부과 현황”과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13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 81,315,91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춘천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오수발생량이 1일 10m³ 이상 증가한 업체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8. 7. 30. 주식회사 〰〰 등 5건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 134,524,350원을 부과하였다.

구미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단위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과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과소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72) 건축주(민원인)의 부과신청은 구두요청(전화 또는 직접 방문)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부과 신청일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구미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일로부터 3~5일 전에 부과 신청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과일 5일전 날짜를 부과 신청일로 추정하였음

173) 단위단가는 1년 이상 적용 후 변경되므로 부과신청일 1~2일 차이에 따른 영향이 작음

조치할 사항

춘천시장은 BQ 등 8건의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미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3,368,000원을 「하수도법」 제61조 등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구미시장은

① BR 등 13건의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과소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계 81,315,910원을 「하수도법」 제61조 등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단위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적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2018. 7. 30. 주식회사 ■■■ 등 5건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 134,524,350원을 부과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별표 1]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현황

(단위: 원, m³/일)

연번	기관명	영업신고 일자	업소명	소재지	변경 전 용도	증가량	미부과금액
1	춘천시	2014. 11. 25.	☐☐☐ (☐☐☐)	-	사무소	11.22	23,247,000
2		2015. 12. 16.	- -	-	소매점	10.88	23,424,000
3		2017. 2. 9.	-	-	교회	18.56	37,992,000
4		2017. 8. 23.	-	-	사무소	14.4	28,843,000
5		2017. 9. 27.	-	-	소매점	26.29	52,658,000
6		2017. 12. 15.	- (-)	-	소매점	37.52	75,152,000
7		2017. 4. 6.	- (-)	-	사무소, 휴게 음식점	8.26 ^{주)}	16,544,000
8		2018. 2. 21.	- -	-	신축	42.69	85,508,00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6. 15.	- (-)	-	소매점	26.19	25,220,970
10		2017. 9. 13.	-	-	휴게음식점	12.85	12,380,320
11		2017. 11. 22.	-	-	의원	19.85	13,519,890
			-	-	의원		
12		2017. 3. 13.	-	-	미용원	27.38	18,645,780
			- -	-	미용원		
			-	-	사무소		
13		2016. 11. 28.	-	-	소매점	18.37	15,085,850
		2017. 8. 25.	-	-	소매점	51.58	49,671,540
		2017. 8. 25.	- -	-	의원		
계							477,892,350

주: 기존 발생량 8.35m³+용도변경으로 인한 증가량 9.91m³=18.26m³으로 18.26m³-10m³=8.26m³에 대해서만 부과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소 부과 현황

(단위: m³/일, 원)

연 번	건축주 성명	건축물 소재지	건축 협약일	착공일	사용 승인일	부과 신청일 ^주	부과일	오수량 (A)	정당 부과단가 (B)	실제 부과단가 (C)	차액 (D=B-C)	과소 부과액 (A×D)	비고
1	BR 외 3인	-	2014. 6. 26.	2014. 7. 16.	2015. 1. 6.	2014. 12. 11.	2014. 12. 16.	28.49	1,011,000	835,000	176,000	5,014,240	착공일로 부터 1년 내 사용승인
2	-	-	2014. 6. 17.	2014. 10. 2.	2015. 1. 2.	2014. 12. 10.	2014. 12. 15.	18.02	1,011,000	835,000	176,000	3,171,520	
3	-외 1인	-외 2필지	2014. 4. 17.	2014. 8. 14.	2015. 2. 11.	2014. 12. 10.	2014. 12. 15.	16.96	1,011,000	835,000	176,000	2,984,960	
4	-	-	2014. 3. 5.	2014. 7. 1.	2014. 12. 22.	2014. 11. 30.	2014. 12. 5.	14.91	1,011,000	835,000	176,000	2,624,160	
5	-외 1인	-외 1필지	2014. 4. 9.	2014. 7. 23.	2014. 9. 26.	2014. 9. 10.	2014. 9. 15.	11.12	1,011,000	835,000	176,000	1,957,120	
6	-외 1인	-외 1필지	2014. 4. 9.	2014. 7. 23.	2014. 9. 24.	2014. 9. 10.	2014. 9. 15.	10.98	1,011,000	835,000	176,000	1,932,480	
7	- -	-	2012. 2. 13.	2014. 3. 4.	2014. 8. 12.	2014. 7. 25.	2014. 7. 30.	15.45	835,000	716,000	119,000	1,838,550	
8	유한회사 -	-외 1필지	2017. 5. 12.	2017. 6. 20.	2018. 3. 15.	2018. 2. 2.	2018. 2. 7.	79.74	1,287,000	1,271,000	16,000	1,275,840	
9	주식회사 ■■■■	-외 5필지	2012. 1. 4.	2013. 3. 16.	2014. 12. 1.	2014. 10. 11.	2014. 10. 16.	64.08	1,011,000	716,000	295,000	18,903,600	착공일로 부터 1년 후 사용승인
10	-	-(산70-7)	2013. 6. 19.	2013. 7. 5.	2014. 12. 8.	2014. 9. 12.	2014. 9. 17.	104.69	1,011,000	835,000	176,000	18,425,440	
11	주식회사 -	-	2013. 8. 12.	2013. 9. 24.	2014. 11. 5.	2014. 10. 11.	2014. 10. 16.	64.7	1,011,000	835,000	176,000	11,387,200	
12	-	-외 2필지	2012. 6. 14.	2013. 2. 18.	2014. 10. 16.	2014. 10. 8.	2014. 10. 13.	52.25	1,011,000	835,000	176,000	9,196,000	
13	- 주식회사	-	2013. 2. 15.	2013. 4. 29.	2014. 12. 8.	2014. 11. 14.	2014. 11. 19.	14.8	1,011,000	835,000	176,000	2,604,800	
계												81,315,910	

주: 부과일로부터 5일 전 기준일

자료: 구미시 자료 재구성